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강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197 발의연월일 : 2025. 4. 28.

발 의 자:이강일·김남근·김남희

김문수 · 김우영 · 김태선

김현정 · 민병덕 · 박정현

황운하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양도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, 기존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양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내 집마련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, 공공주택사업자 순으로 양도하도록 하고, 양도 가격 산정방법을 규정하며, 표시 ·광고 시 그 사본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양도에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제43조제3항 등).

주요내용

가.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

경우 입주한 후부터 양도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인, 공공주택사업자 순으로 우선적으로 양도하도록 함(안 제43조제3항).

- 나. 양도 가격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제한함(안 제43조제4항).
- 다.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함(안 제43조 제5항).
- 라.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에 관한 표시 · 광고 또는 양수인 모집을 하는 경우 규제를 마련함(안 제43조제6항 및 제7항).

법률 제 호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5호 중 "제6항에"를 "제10항에"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"제43조제4항에"를 "제43조제8항에"로 한다.

제43조제3항 전단 중 "국토교통부령으로"를 "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에게 양도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0항(종전의 제6항) 중 "제5항에"를 "제9항에"로 한다.

- 1. 입주한 후부터 양도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인
- 2. 공공주택사업자
- 3.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
- ④ 임대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격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(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)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
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제3항제2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를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- ⑥ 임대사업자는 양도하려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시 및 광고(「표시・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」 제2조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을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출받은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을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, 양도받은 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
- ⑦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임대사업자(양도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1.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으로 하여 금 민간임대주택을 양도받도록 유인하는 행위
- 2.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양도 받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퍼뜨리는 행위
- 3. 상대방이 민간임대주택을 양도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 구하고 전화·모사전송·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민간임대주택을

양도받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

제65조제2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8의2. 제43조제4항에 따른 양도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민간임대주 택을 양도한 자
- 8의3. 제43조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 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으로 하여금 민간임대주택을 양도받도록 유인한 자
- 5의2. 제43조제7항제2호를 위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양도받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민간임대 주택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퍼뜨린 자

제6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제43조제4항을"을 "제43조제8항을"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의2. 제43조제7항제3호를 위반하여 전화·모사전송·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양도받을 것을 강요한 자
- ⑥ 제43조제4항에 따른 양도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이익의 3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민간임대주택의 양도에 관한 적용례) 제4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)	제6조(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)
①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임대	①
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	
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	
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.	
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	
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	
말소하여야 한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제43조제2항 또는 <u>제6항에</u>	5 <u>제10항에</u> -
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	
경우	
6. <u>제43조제4항에</u> 따라 민간임	6. <u>제43조제8항에</u>
대주택을 양도한 경우	
7. ~ 17. (생 략)	7. ~ 17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43조(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)	제43조(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)
① · ② (생 략)	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	3
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	
도하려는 경우 <u>국토교통부령으</u>	<u>다음 각 호의</u>
<u>로</u>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	순서에 따른 자에게 양도하고
수・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	<u>국토교통부령으로</u>

다. 이 경우 양도받는 자가 임 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한다.

<신 <u>설></u>

 <신</th>
 설>

 <신</th>
 설>

 <신</th>
 설>

<신 설>

-----. -------.

----.

- 1. 입주한 후부터 양도할 때까 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임차인
- 2. 공공주택사업자
- 3.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
- ④ 임대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양도 가격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(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)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업이 산정한 감정평가급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초과할수 없다.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 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제 3항제2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를 「조 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

<신 설>

<신 설>

제한법」,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⑥ 임대사업자는 양도하려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시 및 광고(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| 제2조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한 경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을 시장 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. 이 경우 시장・군수・ 구청장은 제출받은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을 2년 이상 보관 하여야 하며, 양도받은 자가 열 람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 하여야 한다.

- ①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임대사업자(양도 업무를 대행 하는 자를 포함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1.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으

<u>④</u>· <u>⑤</u> (생 략)

⑥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과 <u>제5항에</u> 따라 신고가 수리 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 도할 수 있다.

제65조(벌칙) ① (생 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 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

로 하여	금 민간임	대주택을	양
도받도록	록 유인하는	- 행위	

- 2.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양도받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퍼뜨리는 행위
- 3. 상대방이 민간임대주택을 양 도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 음에도 불구하고 전화·모사 전송·컴퓨터통신 등을 통하 여 민간임대주택을 양도받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
- <u>③</u> · <u>⑨</u> (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)

<u>(10)</u>	 	
	 	 <u>제</u> 9항
<u>에</u> -	 	

제65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

2	 	 	 	

처한다.

1. ~ 8.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5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6. (생략)

제67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

1. ~ 8. (현행과 같음)
8의2. 제43조제4항에 따른 양도
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민간
임대주택을 양도한 자
8의3. 제43조제7항제1호를 위반
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
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
타인으로 하여금 민간임대주
택을 양도받도록 유인한 자
3
<u>.</u>
1. ~ 5. (현행과 같음)
5의2. 제43조제7항제2호를 위반
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
판단을 하게 하여 민간임대주
택을 양도받도록 유인할 목적
으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거
<u>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</u>
<u> 퍼뜨린 자</u>
6. (현행과 같음)
]67조(과태료) ①

부과한다.

1. (생략)

<신 설>

- 2.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3.·4. (생략)
- ② ~ ⑤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⑥ (생 략)

•

- 1. (현행과 같음)
- 1의2. 제43조제7항제3호를 위반 하여 전화・모사전송・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민간임대주 택을 양도받을 것을 강요한 <u>자</u>
- 2. <u>제43조제8항을</u>-----
- 3. 4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- ⑥ 제43조제4항에 따른 양도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민간 임대주택을 양도한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이익의 3배 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다.
- <u>⑦</u> (현행 제6항과 같음)